

2001년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65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1. 21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1. 27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11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고성군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점검과 정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예방위주의 방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.
-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 480,000천원이 소요되나 2000년 당초 및 추경시 300,0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액 180,000천원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코져 함.

3. 주요골자

□ 기금구성

- '97 ~ 2000 총 기금구성액 : 253,781,765원
 - '97 ~ 2000 법정기금구성액 : 243,540,200원
 - '97 ~ 2000 기금 이자수입 : 10,241,565원
- 2001년 법정기금 예산액 : 66,525,000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재해대책기금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8/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97년도부터 기금으로 적립해 온 것으로

-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제3호에서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·용역사업에 동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, 동 조례 제10조에서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0년 발주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비중 부족분 180,000천원을 재해대책 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바 기금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
- 다만, 기금조성에 있어 '97 ~ 2000 법정기금 조성액에 비하여 기금 이자수입이 적절하였는지와 금후 매년 동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기적인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1억8천만원은 2000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승인을 받지 못해서 다시 용역계획을 한 것인지
- 답 : 2000년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하고 2차 추경에서 2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3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억8천만원은 재원이 없어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임.
- 문 :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관계는 어떠한지
- 답 : 이자수입은 지금까지 1,024만1천565원의 이자가 수입되었는데 이것은 원금 2억4,354만200원에 대해서 전체 이자가 아니고 아직 만기가 미 도래된 것은 이자계산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